제215회 임시회 광 진 구 의 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8. 6. 22.

의회운영위원회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436호

2018.6.22. 의회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8.06.19.

나. 회부일자 : 2018.06.20.

다. 상정일자: 2018.06.21.

##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공영목 의원(대표발의) 공영목, 김영옥 의원 (공동발의)

#### 나. 개정이유

본 규칙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2017.4.11.)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구 회의진행 운영상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의장단 선출시기 및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의 근거규정 및 대상·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안 제6조제1항 및 제8항)
- 의장단 임기 명확화(안 제7조제2항)
- 인터넷방송 중계관련 근거 신설 및 대상·기준 규정(안 제78조제1~2호)

####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8조, 제54조, 제65조, 제71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수만)

○ 의안번호 제14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8년 6월 19일 공영목·김영옥 의원(대표발의 공영목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8년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 위 규칙개정안은 의장단 선출시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전 10일 이내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전·후반기 의장단 임기를 균등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의장단의 임기가 일정하지 않을 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임기의 시작과 만료를 명시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

또한 인터넷방송 중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중계대상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회의진행 과정의 공개로 열린 의회 운영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여 지방의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 주요 개정내용

## ①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안 제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최초 집회일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제6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 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 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10일 이내에 차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 O 개정의 필요성

현 회의규칙에는 최초 집회일에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시기가 불명확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전반기 임기 만료일 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을 지체없이 하고 의장단 임기를 전·후반기 가급적 균등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에 명문화 함.

다만 상위법인 『국회법』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에서는 전반기 임기 만료일 전 5일 전에 실시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타 자치구 중 동일하게 5일 이내로 규정한 곳이 대다수이나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여 10일 이내로 규정함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회기운영의 유연성을 위하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 서울시 타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						
자치구	5일	자치구	기 타			
서울시, 강동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	5일	용산구	15일 이내			
노원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5일 이전(이내)	중인구	ise 이대			

## ○ 주요 개정내용

## ② 의장단 선거 직무대행 규정 추가(안 제6조제8항)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전 10일 이내에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의 직무수행은 『지방자치법』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운영이 차질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추가 단서를 보완하여 부득이한 상황시에도 의사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위원회 활동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위와 같이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 개정내용

## ③ 의장단 임기 명확화 (안 제7조제2항)

의장단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을 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임기의 시작과 만료를 명시하여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전반기 의장단을 6월 30일까지 만료하여 후반기 의장단을 예정대로 구성함으로써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임.

또한 현 회의규칙대로 운영시, 전반기 의장단은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고도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일까지 재임함에 따라 몇일의 범위내에서 임기가 연장될 수 있으나 전반기 의장단 때문에 후반기 의장단은 임기가 상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 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할 조항으로 판단됨.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이기도 하며,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현재 개정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구 회의규칙과 위원회 조례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사무에 통일성을 두고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회의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타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 하고 있으나 강서구의 경우 현행 우리구 조례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 ④ 인터넷방송 중계관련 근거 신설 및 대상ㆍ기준 규정(안 제78조제1~2호)

#### 인터넷방송 중계 조항 신설근거

-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2017.4.11.)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 2.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회의규칙 개정 권고'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무 명시 (2013.8.26.)
- 3. 『지방자치법』제65조(회의의 공개) 및 제71조(회의규칙)
- 4. 『국회법』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 5.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 ~ 제11조의2

		현	행	개 정 안
	설>			제78조의1(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의회 회의과정
				을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
<신 설				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신 :	설>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
			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
				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
				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3.8.26.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자체의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것을 전국 광역의회에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의회에서는 현재 대다수 인터넷방송 중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회의규칙 등에 명문화하여 법적근거도 마련하였음.

광역의회 인터넷 중계방송 관련 회의규칙					
광역의회	중계방송 의무	광역의회	중계방송 대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강행규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본회의 및 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임의규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본회의		

현재 우리구 개정안은 중계방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중계방송의 대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중계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한함)로 규정함.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 관악구, 중구 등도 의회 인터넷방송 중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에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이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회의규칙에는 이를명문화 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구는 인터넷방송 중계 실시 전 회의규칙으로 먼저 명확하게 규정 후 이를 추진하여 입법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열린의회 구축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현재 정례회나 임시회를 보기 위해서는 직접 회의장을 방문해 방청하거나 수일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회의록이나 녹화영상을 보아야만 회의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향후 8대 의회부터 인터넷방송 중계를 실시하게 되면,

인터넷생중계 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을 볼 수 있어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회의상황이 영상으로 생중계되기에 의원들에게도 긴장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발전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판단됨.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이며, 인터넷 중계 방송이 그 소통 창구가 될 것임. 하지만 중계방송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홍보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u>광진구의회 실시간 인터넷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추진절차</u>

- ① 물품구매 (조달구매) ----- 2018.3월
- ② 시설장비 (전자수의계약) ----- 2018. 3월
- ③ 인터넷방송시설 최종 설치 ----- 2018. 4. 2.
- ④ 제215회 임시회 회의규칙 개정안건 상정 ----- 2018.6.21.
- ⑤ 회의규칙 개정안 심의 통과 후 공식방송 개시

## 광진구의회 실시간 인터넷 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주요내용

- ① 설치대상 :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2)
- ② 기존 아날로그 방송장비를 디지털 통합 방송장비로 교체
- ③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를 통한 실시간인터넷/모바일 방송 실현 (구의회 청내방송, 구청IPTV, 구의회 홈페이지, 모바일)
- ④ 구청IPTV 연계를 통한 의사과정 업무공유
- ⑤ 실시간 방송 구현 위한 케이블 설치공사
- ⑥ 총 소요예산 : 8천6백만원(시설장비 7천5백만원, 설치공사 1천1백만원)

## ○ 종합 검토의견

- 본 의회 회의규칙은 의장·부의장 선출시기와 임기만료 등에 대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공석시 직무수행에 관하여『지방자치법』제54조를 적용함으로써 공백기간을 없애고 원활한 의회운영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 규칙(안) 제78조의1(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중계방송하여 광진구의회의 주요 정책사항 또는 현안사항 등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거나 공개가 불가할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향후 운영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의장단 및 상임위에서 본 회의규칙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 5. 토론

○ 회의록 참조

#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2인 중 찬성 2인으로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